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유지성 소유물건(2025타경508833)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감정평가서번호: JWB-250429-6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정원 경인지사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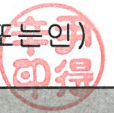
감정평가사
임의순

임의순



(주)감정평가법인정원 경인지사 지사장 윤득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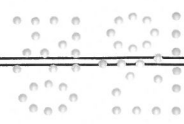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일억구천만원정 (₩190,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상규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9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유지성 (2025타경508833)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4.29	2025.04.29	2025.04.30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90,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90,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장수선	장수선		(인)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19-9 벨라루체	공동주택,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5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99			지2층	730.17			
				지1층	791.25			
				1층	525.43			
				2층~6층(각각)	614.02			
			7층~15층(각각)	601				
	동소	519-9	대	일반상업지역	961.9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7층 제705호	58.420	58.42	190,000,000	비준가액 (공용부분 포함)
					8.35			
				1 소유권대지권	961.9 × $\frac{8.35}{961.9}$	8.35		
	합 계					₩190,000,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흥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벨라루체' 제7층 제705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경매9계의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4월 29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4월 29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의 조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II. 기타 참고사항

1. 물적 동일성 여부 및 공부와의 차이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2. 임대사항의 확인

- ① 미상임.

3.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 구분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구분 등기되어 있고 구조 및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으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구분소유 건물임.
- ② 본건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현황 표기 등에 의거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의 개요

소재지·건물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19-9 벨라루체 제7층 제705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99 (부평동)		
	주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133개호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	2015.11.23	
	건물규모	층수	지하 2층/지상 15층
		연면적	10,525.95 m ²
	비고	-	

2. 각 호별 상세 개요

일련 번호	동/ 층/호수	용도	건물면적(m ²)			대지권 (m ²)	비고 (전용률 (%))
			전유	공용	분양		
가	-/ 7/705	오피스텔	58.42	32.94	91.36	8.35	63.94
합계 (1개호)			58.42	32.94	91.36	8.35	-

※ 분양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면적으로, 시장의 통상적인 분양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이하 동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거래사례비교법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생략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

$$\text{감정평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치}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치}$$

2. 감정평가시 고려사항

-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동/ 층/호	용도	면적(m ²)		거래가액(원) (원/전유m ²)	거래시점 (사용승인)	비고
				전유	분양			
#1	부평동 519-9	10/1006	오피스텔	59.93	93.71	196,000,000 (@3,270,000)	2023.10.14 (2015.11.23)	-
#2	부평동 519-9	9/909	오피스텔	67.59	105.71	208,000,000 (@3,080,000)	2025.03.08 (2015.11.23)	-
#3	부평동 528-9	9/101-904	업무시설 (오피스텔)	59.77	81.647	195,000,000 (@3,260,000)	2024.11.17 (2017.08.31)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2)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본건과 동일·유사한 집합건축물 내의 거래사례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사례 #2 > : 일련번호 가

(3) 사정보정

의견	사정보정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0

(4) 시점수정

(가) 적용기준

■ 비교 거래사례#2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매매가격지수(아래 표 참조)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시군구	상승률 (시점수정치)	산출근거			
		거래시점 / 기준시점		2025.03.08/ 2025.04.29	
인천 오피스텔(주거용)	-0.372% (0.99628)	매매가격 지수	사례거래 당시 지수	2025.02	96.89
			기준시점 당시 지수	2025.03	96.53
		산식		$1 + (96.53 - 96.89) / 96.89$ ≈ 0.99628	

※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의 각 직전 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해당월 지수가 미발표시 가장 최근 발표된 지수를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5) 가치형성요인 비교

■ 주거용[일련번호 가] / 비교사례 #2]

조 건	세부항목(주거용)	격차율	비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6	본건은 사례대비 전유부분의 면적 등에서 우세함.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감정평가목적 및 부동산 경기상황 등을 고려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누계)		1.060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본 건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시산가액(단가) 산정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일련 번호	동/층 호수	전유 (사정 면적(m ²))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전유m ²)
			일련 번호	단가 (원/전유m ²)						
가	7/705	58.42	#2	3,080,000	1.000	0.99628	1.060	3,250,000	189,865,000	190,000,000
합계		58.42	-	-	-	-	-	-	-	190,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V. 참고가격자료

1.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거래수준(원/전유㎡)	기타
오피스텔	일반 상가지대	광대로변	2,900,000-3,400,000	일반상업

본건 지역의 거래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2. 본건 평가사례

본건의 최근 3년 이내의 평가사례는 포착되지 않음.

3.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동/층/호	용도	면적(㎡)		감정평가액(원) (원/전유㎡)	기준시점 (사용승인)	평가 목적
			전유	분양			
(1)	부평동 519-9 12/1205	오피스텔	58.42	91.36	201,000,000	2025.03.05 (2015.11.23)	법원경매
					(@3,440,000)		
(2)	부평동 519-9 11/1106	오피스텔	59.93	93.71	193,000,000	2024.06.11 (2015.11.23)	법원경매
					(@3,220,000)		

※ 분양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임.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4. 경매동향

용도별	인천 부평구 2024년 04월 ~ 2025년 03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집합건물	141,544,700,000	112,576,713,201	79.5	1,973	627	31.8
오피스텔	11,786,000,000	9,238,273,747	78.4	114	50	43.9
오피스텔(주거)	58,266,000,000	46,915,831,708	80.5	721	256	35.5

(출처 : 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본건 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평가대상		전유면적(m ²)	대지권(m ²)	감정평가액(원)
가	제7층 제705호	58.42	8.35	190,000,000
합계		58.42	8.35	190,000,000

결정의견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 참고가격자료를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	--

2. 기타 참고사항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흥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오피스텔, 아파트, 업무시설, 상업용 빌딩,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및 인천 도시철도 1호선 '부평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5층 건물 내 제7층 제70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11.23)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공부상 오피스텔임.

※ 본건은 현장조사 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등의 부재로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외관 및 탐문조사 등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업무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및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동측, 남측으로 노폭 약 8m, 35m,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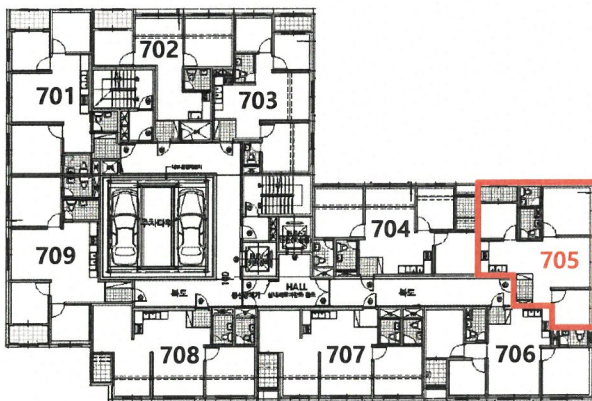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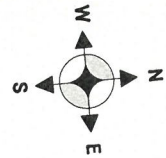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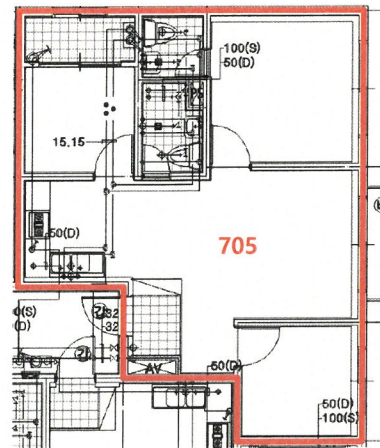


S = no scale

本 件
벨라루체 제7층 제705호



[호별배치도]



[내부구조도]

사진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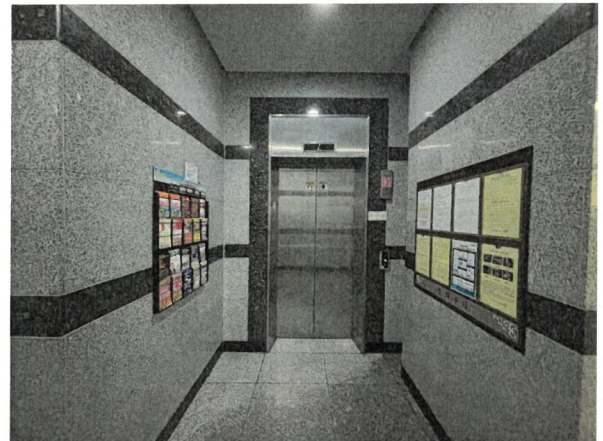
본건 전경



본건 건물 출입구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공동현관



본건 승강기



본건 현관



주위 전경